군보

홍성군
HONGSEONG-GUN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771호 ◆ 2022. 1. 11.(화)
발 행: 홍성군
편 집: 홍보전산담당관(041)630-1223

입법예고

○ 제2022-64호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

고 시

○ 제2021-512호 도로명주소 고시 ····· 11

공 고

○ 제2021-108호 도로지정 공고 ····· 15

회람								

홍성군 공고 제2022-64호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2. 공포, '22.1.13.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으로 원활한 제도 시행의 계속성과 안정성 도모하고자 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05의 위임사항과 필요사항 규정 (안 제1조)

나. 군수 당선 결정일로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규정 (안 제3조)

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 당선인에 필요한 지원 (안 제4조)

라. 군 조직・기능 및 예산파악, 새로운 정책기조 설정 및 취임행사 준비, 그 밖에 사항 (안 제6조)

마. 위원장1, 부위원장1 포함 10명 이하 구성 (안 제7조)

바. 당선인 보좌 및 지시사항 처리 (안 제9조)

사.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등 지원 (안 제11조)

아. 활동결과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안 제13조)

자. 「홍성군 실비 변상 조례」 따라 수당・여비 지급 (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216, 팩스: 041)630-1661 E-mail: guy09072@korea.kr

붙임 1.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홍성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활동 협조)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군수에게 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는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홍성군 고시 제2021-512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홍 성 군 수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및 효력발생일

종전(지번)주소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효력발생일
홍성군 결성면 행산리 637-8	홍성군 결성면 내포로951번길 133-20	2021.12.30.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494-10	홍성군 갈산면 갈산서길249번길 158	2021.12.30.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248-3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829-7	2021.12.30.
홍성군 은하면 학산리 763-7	홍성군 은하면 구성남로310번길 68-9	2021.12.30.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93-2	홍성군 갈산면 운곡3길 51-41	2021.12.30.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662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497번길 143	2021.12.30.
홍성군 홍동면 홍동리 1038,1038-1,1038-3	홍성군 홍동면 홍남동로279번길 140-44	2021.12.30.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1038-5,1038-6	홍성군 홍동면 홍남동로279번길 140-42	2021.12.30.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104-1	홍성군 장곡면 홍장남로 151-12	2021.12.30.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96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74	2021.12.30.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76-12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382번길 95-50	2021.12.30.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86-11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699번길 201	2021.12.30.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109-3	홍성군 광천읍 옹암3길 108-10	2021.12.30.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137-14	홍성군 홍북읍 솔바위길 23	2021.12.30.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30 , 28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 209-86	2021.12.30.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041-630-1558)에 문의 또는 새주소안내 홈페이지(https://www.jud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 등의 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건물번호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와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부여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및 효력발생일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637-8	홍성군 결성면 내포로951번길 133-20	21.12.30	신축	09.10.21	내포는순수한우리말로안개란뜻으로바닷물이육지깊숙이들어와내륙깊은곳까지배가항해할수있는지역으로홍성은과거에충청도서부해안지역인내포의중심지역이었음을감안하여명명한내포로시작지점으로부터9,51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494-10	홍성군 갈산면 갈산서길249번길 158	21.12.30	신축	09.10.21	행정구역(갈산)명을이용하고갈산면을중심으로서쪽에위치하여명명한갈산서길의시작지점으로부터2,49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248-3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829-7	21.12.30	신축	09.10.21	충청남도 서쪽의 중심도로로 방위사용	
홍성군 은하면 학산리 763-7	홍성군 은하면 구성남로310번길 68-9	21.12.30	신축	09.10.21	구항면에서결성면까지연결된도로로구항의(구)자와결성의(성)자를조합하고방위(남쪽)를이용하여명명한구성남로의시작지점으로부터3,100m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93-2	홍성군 갈산면 운곡3길 51-41	21.12.30	신축	09.10.21	법정리(운곡)명을이용하고숫자를활용하여운곡3길로명명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662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497번길 143	21.12.30	신축	09.10.21	한국의시인,승려이자독립운동가인만해한용운선생님생가지주변에위치하여명명한만해로시작지점으로부터4,97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1038,1038-1,1038-3	홍성군 홍동면 홍남동로279번길 140-44	21.12.30	신축	09.10.21	군소재지를중심으로남쪽에위치한중심도로이므로홍남로하고홍남로를기준으로동쪽방향으로가는도로이므로명명한홍남동로의시작지점으로부터2,79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1038-5,1038-6	홍성군 홍동면 홍남동로279번길 140-42	21.12.30	신축	09.10.21	군소재지를중심으로남쪽에위치한중심도로이므로홍남로하고홍남로를기준으로동쪽방향으로가는도로이므로명명한홍남동로의시작지점으로부터2,79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104-1	홍성군 장곡면 홍장남로 151-12	21.12.30	신축	09.10.21	군소재지를중심으로남쪽에위치한중심도로이므로홍남로하고홍남로를기준으로동쪽방향으로가는도로이므로명명한홍남동로의시작지점으로부터2,79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96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74	21.12.30	신축	09.10.21	행정구역(갈산)명을 이용하여 갈산로로 명명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76-12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382번길 95-50	21.12.30	신축	09.10.21	행정구역(금마)명을이용하여명명한금마로의시작지점으로부터3,820m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로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86-11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699번길 201	21.12.30	신축	09.10.21	광천읍에서금마면까지연결된도로로광천의(광)자와금마의(금)자를조합하고방위(남쪽)를이용하여명명한광금남로의시작지점으로부터6,990m지점에서왼쪽으로분기되는도로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109-3	홍성군 광천읍 옹암3길 108-10	21.12.30	신축	09.10.21	법정리(옹암)명을이용하고숫자를활용하여옹암3길로명명	
홍성군 홍북읍 중계리 137-14	홍성군 홍북읍 솔바위길 23	21.12.30	신축	20.07.14	솔바위 전원마을 명칭 사용하여 솔바위길로 명명	
홍성군 광천읍 옴산리 30, 28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 209-86	21.12.30	신축	09.10.21	아름다운전설과전통사찰을끼고산정에는은빛깔의억새풀을두루채서해의푸른물결을굽어보고있으며충남서북부최고봉인오서산가는길임을반영하여오서길로명명	

홍성군 홍성읍 공고 제 2021-108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홍 성 군 수

도로지정 현황					
도 로 위 치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57-3, -21, 656-22, -24				
지 정 목 적	신축건물 진·출입로				
도로의 종류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				
도 로 길 이	62.30m	도로너비	6m	도로면적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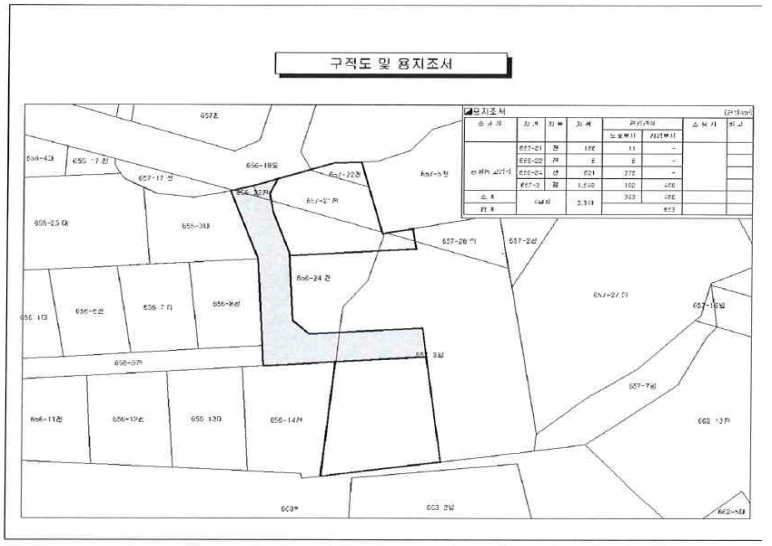
※지정부분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v] 1 / 400, [ ]